

##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 Legal Issues on the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소재열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Jae-Youl So(sojy21@hanmail.net)

#### 요약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단체 중의 하나이며,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귀속에 대해서 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는 일차적으로 정관의 적용을 받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사원의 준총유이다(제275조, 제278조). 지난 50여년 동안 대법원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개신교 교회에 대하여서만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했다. 새로운 판례(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의 분쟁해결을 위해 대법원은 종전의 분열인정에서 부인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은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 중심어 : | 교회분쟁 | 교회분열 | 법인격 없는 사단 | 총유 |

#### Abstract

Church is one of organizations recognized not as corporation but as private association and therefore its identity and possession of properties must be confirmed by the general theories of the civil law in relation not to corporation but to private association. Different from corporation, the internal relations of private association is primarily regulat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hen there is no article of association, ordinary resolution and provisions for incorporated association in the civil law are applied by inference. As for the debt of private association, all the members own it in a quasi-joint manner (article 275 and 278). For the last 50 years,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s permitted the partition of church for the Protestant church and ruled that the relationship of properties at the time of partition is the joint ownership by church members at the time of partition. This ruling is different from that of corporation and ordinary principles of law. However, a new judicial precedent (the Supreme Court, 2006. 4. 20, 2004다37775) prescribes that different from corporation, the partition of private association is not allowed. Thus,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of private association, the Supreme Court changes its traditional standpoint of allowing partition into denying it. This ruling seems to reflect the necessity of settling dispute above all.

■ keyword : | Schism of the Church | Disputes of a Church | Unincorporated Association | Collective Ownership |

## I. 서론

민법상 법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가 많다.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재산을 갖고 대표자를 뽑은 다음 그 단체가 직접 사회경제적인 주체로 활동하는 때에는 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분류하여 법인에 준하여 취급한다. 한국 사회에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법의 한 분야로 학설과 판례상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이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단체 중의 하나가 교회이다. 법률상의 개념으로 교회 내지 지교회(支教會)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구분하지만, 교회는 교인의 생활을 규율하고 교회 재정을 관리하며 교회 내에서 신앙적인 잘못을 행한 자에 대하여 그 교역자나 교인의 권리를 일시 정지 및 영구히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는 교회재판을 시행하여 강제하는 교회권력과 교인 사이를 규율하는 교회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개신교회는 1517년 가톨릭교회와 2대 분파로 나누어졌으며,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루며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체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신경과 행정조직 및 재판권을 포함한 치리권(治理權)의 행사방법 여하에 따라 교회 정치 형태가 달라진다.

한국 민법전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하여 그 소유관계를 ‘총유’로 규정하는 제275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사용·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각 사원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제276조, “총유물에 대한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고 하는 제277조, 그리고 “총유 규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하는 제278조 등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에 관한 4개의 추상적 조문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산귀속관계 이외의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1]. 판례는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

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고 했다(2006. 4. 20. 선고 2004다 37775 전원합의체판결, 이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표기함).

본 논문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의 법률관계의 지평속에서 교회분쟁시 교회재산권과 그 귀속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일반이론을 논한 다음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교회재산권 이해 및 재산귀속과 분쟁의 해결방안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 II.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와 적용법규

###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실질적으로 社團이나 法人으로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서 法人格이 부여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권리능력이 없게 된 단체이다[2].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갖추었으면서도 민법상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와 설립등기(제33조) 등 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갖추지 않은 단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 부른다. 법인 설립등기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을 뿐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요건에는 차이가 없다.

조합과 대비한 사단의 실질요건으로서 통설은 단체(社團)로서의 조직을 갖추는 것과,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주요한 사항이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여 정하여 있을 것을 들고 있고[3], 그 밖의 다수결 원칙이 행하여질 것과 구성원의 변동과 상관없이 존속할 것 등을 들고 있다. 이같은 통설과 함께 판례는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

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4]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성요건이 구비되는 것을 전제로 관례상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단체로서 대표되는 것은 종종, 사찰, 교회, 동리 부락, 아파트주민단체 등이 있고 그 밖에는 건축조합과 재건축조합 및 연합주택조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시장 변영회 등이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는 일차적으로 정관의 적용을 받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된다. 사단은 대외적으로 민법외의 법률, 즉 부동산등기법(제30조)이나 민사소송법(제52조), 행정심판법(제10조), 특허법(제4조), 국제기본법(제13조), 기타 등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도 사실상 사단법인과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 2.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따른 적용법규

### 2.1 총유 규정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의 권리주체가 소유하는 경우가 단독소유이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공동소유이다. 소유권은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귀속하는 권리로서 공법학에서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자유의 보장 문제가 중요 과제인 것 같이, 사법학의 영역에서도 시민상호간의 소유권 보장 문제는 그 中核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실제로 物權에서 중심적 이론을 형성·전개하고 있다[5]. 소유권은 본래 물건을 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한 물건에 한 소유권이 성립하며, 한 물건에 동시에 수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실재상 수인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하려는 제도가 공동소유인데 이러한 공동소유에 관하여 구민법은 공유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구민법 제249조 내지 제263조) 현행 민법이 제정되면서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제260조-제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275조-제277조)의 3가지 형태로 규정하게 되었

다. 총유는 본질적으로 근대법상의 법인이나 조합이 아닌 공동체를 전제로 성립되는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를 총유로 하고 있으며(민법 제275조 제1항) 관례도 전적으로 이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총유관계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인적단체를 그 기분을 하여 성립된다.

민법의 규정인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지분권 없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 총유의 주체는 ‘법인 아닌 사단’(예 종종, 교회, 사찰, 촌락, 의사회, 친목회, 동창회, 학회, 어촌계 등)이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인격 결합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구성원이 그 인격 결합체로부터 단체적 구속을 받는 점에서 공유와 다르고 합유와 공통된다. 합유와의 차이점은 그 기초인 인격 결합체가 단일적 활동체로서 단체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그 단체의 기구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 행사된다는 점에 있다.

총유에서 각 사원은 지분권을 갖는가에 있어서 “법인에서는 법인만이 소유의 주체가 되고 사원은 소유주가 되지 못하므로 따라서 지분권도 갖지 않음이 원칙이며 이 점은 법인 아닌 사단”(대법원 2000. 9. 26. 선고 97다 51186 판결)에서도 같다. 또한 물건의 사용·수익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각 사원에게 허용된다는 점에서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같으며, “법인 소유의 물건의 지분에 관해서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관습”이며 대부분의 법인이 이에 관한 정관규정을 갖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276조 1항).

### 2.2 법인규정의 유추적용

유추해석(analogy)이란 법령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이와 성질이 유사한 다른 사항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여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이다. 유추해석은 입법정신을 찾아 법을 적용하는 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민법은 물건소유관계 이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단의 내부관계, 즉 총회의 결의, 구성원의 변동, 사무집행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선임 등

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사단법인과 다를 바가 없음을 이유로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를 총유 또는 준총유로 다루는 것 외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총칙편의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모두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통설이다[6]. 사단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모두 유추적용하는 것이 지배적인 학설이다[7].

판례는 민법 제정 이전에는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었으나, 민법 시행 이후로는 통설과 같이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구체적으로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청산인에 관한 민법 제82조를 유추적용한 예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임면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0조, 수인의 이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제58조 및 총회의 권한을 정관에 의하여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제68조의 유추적용, 사원총회에 관한 민법 제73조 제2항 및 제75조 제2항의 유추적용,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 등을 인정하고 있다.

### 3.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권

#### 3.1 재산권 개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은 ‘사회적인 유용성’과 임의적인 처분권능이 인정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상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민법 제211조)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즉 민법상의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뜻하지만, 헌법상의 재산권은 재산가치(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공법상의 권리를 뜻한다(헌재결정 1992. 6. 26. 90헌바26). 민법이론상에서 볼 때 보편적으로 재산이란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또는 일정한 목적 아래에 결합한

금전적 가치 있는 물건 및 권리, 의무의 전체를 가리켜 말한다.

이같은 재산은 관리, 담보, 귀속, 상속 등의 개체인 물건과 권리, 의무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한다. 재산권의 가장 주요한 것은 물권, 채권, 지적 소유권이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며, 이를 채권법에서 주로 다룬다. 지적소유권은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이라고도 일컫는다. 이것은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에 속한다.

#### 3.2 총유물의 관리·처분

민법에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사용, 수익).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한다(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 득상). 총유물의 관리·처분권은 사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사원의 지위가 상실되면 그 권리도 상실된다.

총유물의 관리는 총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이용·개량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하고, 처분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법률적 행위와 물리적 변경을 가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사실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1994. 4. 26. 선고 93다5191 판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비록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포함하지 아니

하나,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는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 3.3 총유물의 사용·수익

‘법인 아닌 사단’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민법 제276조 제2항). 이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사단의 총유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단 구성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구성원은 ‘법인 아닌 사단’을 탈퇴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상실한다(민법 제277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 3.4 재산권 행사를 위한 사원의 지위취득 및 상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사단의 총유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단 구성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구성원은 ‘법인 아닌 사단’을 탈퇴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상실한다(민법 제277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사용, 수익),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한다.”(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 득상)라는 규정에 준용하여 ‘법인 아닌 사단’에 채무가 발생하는 기채승인은 정관 기타 규약에 규정되어 있으면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지만 그러한 정관과 규약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3.5 채무의 귀속관계

민법 제278조에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본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사원의 준총유이다(제275조, 제27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포함되어 비법인 사단

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이를 준총유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사단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여기서 “사단재단 이외에 사원도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가”라는 문제는 통설과 판례가 사단의 채무는 그 사단의 총유재산만으로 책임을 지고, 사원은 특별히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비 기타의 일정한 부담 외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8].

채무관계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문제는 “비법인 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 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고 “비법인 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 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가 채권과 함께 준총유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 III.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분쟁과 재산귀속

### 1. 교회의 법률적 성질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종래 대법원판례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판시하여 왔다. 이는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서 유지되고 있다(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교회와 같은 신앙에 관한 단체의 재산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교회의 기초는 신앙을 목적으로 한 인적결합체이므로 신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물이나 토지, 건물 등 재산을 중심으로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판례 및 다수설도 교회를 인적결합체로 파악하고 있다. 종례 대법원 판례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판시해 왔다.

여기서 사단적 구조라 함은 구성원의 단체의사(총의)에 따른 자율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조직형태로서 이를 위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결집하여 단체의사를 도출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관(총회)이 있어야 하며 또한 업무 집행기관과 대표기관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개별교회들은 대체로 구성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단적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단체이기는 하지만 실정법에 정한 법인격의 요건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교회 교인의 지위 취득 및 상실

대법원 판례는 교인들에 의한 소속교단 변경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교인의 개념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그냥 교인이라고 했을 때 교회의 교적부에 등재된 모든 사람을 교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세례교인만을 교인으로 볼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2006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단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총 구성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언급하면서 교회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이라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교회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교단의 헌법의 규정과 그 규정에 근거해서 작성된 지교회 정관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교단의 헌법과 정관에 교회 출석한 모든 사람들이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교인이 아니라 세례교인, 혹은 입교인이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인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6년 전원합의체는 “만약 교단 및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므로 2/3에 미치지 못한 교단탈퇴 결의에 참여했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이 경우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교인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인 2/3이상에 미치지 못한 자들이 탈퇴 결의에 참여하는 자는 교인 자격이 상실되며, 또한 타 교단에 개인적으로든 2/3이상에 미치지 못한 단체가 가입할 경우 이들은 모두 교인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 분쟁시 재산귀속에 관한 법적 결정권은 교인총회(공동의회)에 있고 교인총회에서 교인은 그 회원이기 때문이다. 회원인 교인들은 누구며, 총 재적인원에 대한 문제는 법적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 분쟁시에 자파 교인수를 늘리기 위하여 교인을 급조작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교인의 권리에 효력을 발생케 해주는 정확한 명부와 그 명부에 대한 교회법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55조 ②항에 의하면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 한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규정에 준하여 교회는 교인명부를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 3. 교회의 재산 공시문제

### 3.1 지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지교회가 독자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중앙에 본 교회를 두고 그 본 교회 산하 각 지역에 지성전(至聖殿)을 둔 교회가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그 재단에 편입시키고 있다. 이 경우 본 교회와 각 지역교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법인 이사회와 지교회와의 관계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즉 지성전 교회와 그 교회 교인들의 의사와 재단법인 이사들의 의사가 이견을 보일 경우 분쟁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아직까지는 이런 류의 분쟁 사

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경우 외에 큰 대형교회가 독자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편입할 경우 역시 '법인 아닌 사단'으로써의 교회와 재단법인 이사회와의 법률적인 관계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아직 현재까지 이런 분쟁은 미미하나 앞으로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 3.2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한국의 개신교 각 교단들은 교단의 결속력을 높이고, 재단의 안정성을 위하여 유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지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으로 편입시켜 관리하고 있다. 각 교단들은 지교회나 교단의 재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유지재단 또는 신탁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32조)와 등기(민법 제33조)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와 등기를 경료(經了)한 유지재단은 권리능력이 있는 법인들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이나 대한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 대한 감리회 등은 하나의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는 각 노회별로 수개의 유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개교회의 재산에 관해 그 소유를 교단 또는 교단에서 설립한 별도의 유지재단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헌법, 장정 규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지교회에서 뜻을 달리는 교인들끼리의 분쟁과 교회와 교단과의 분쟁으로 재산분규가 발생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지교회 재산의 소유관계, 즉 교단의 재산인가, 지교회의 재산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체계 아래서 교단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부동산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서는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유지재단)의 소유로 등기해 놓았을 때 그 법률관계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대법원은 “교단의 가입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고 교단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신탁으로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지교회의 재산을 교단의 재단법인(유지재단) 명의로 등기 이전해 놓은 개교회의 재산을 교단 탈퇴로 인하여 환수하려고 요구하면 교단은 교회 앞으로 그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가? 대한 감리회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은 유지재단에 이전 등기된 지교회가 교단이나 노회를 탈퇴하는 경우에,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권리상실규정을 두고 있다.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는 태도와는 달리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는 태도와는 달리 정당한 절차를 통한 교단의 탈퇴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경우, 지교회 측에서는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을 환수 받고자 할 것이다. 이때 소속 교단을 탈퇴한 지교회는 재산권상실조항의 무효와 함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반해 유지 재단측에서는 재단에 편입된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증여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여 형식으로 지교회가 유지재단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종의 명의신탁이라고 이미 살펴본바와 같다. 그러나 반환할 경우 실무적인 행정적인 제약이 뒤따른다. 즉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3조) 정관변경에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민법 제45조 제3항) 결국 재단법인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법원은 “비록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에 편입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 3.3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교회재산을 취득할 경우 목회자나 교회 특정인(장로나 집사)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교인들의 헌금과 노력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재산을 확보한 교회재산이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개인 소유재산일 뿐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된다. 이 경우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등기는 무효가 되고 목회자 등이 이를 무단으로 매각하는 것은 횡령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는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교회 명의로 등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나 일부 특정인이 자신들의 재산만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소유권은 유보한채 단순히 개인소유의 재산을 교회당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일 뿐인 경우는 교회재산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은 아니다[9].

### 3.4 지교회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전술한 대로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고,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따라 등기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교회명의로 그 재산을 등기하는 것 또한 허용되고 있다. 이 경우는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교회 재산인 부동산을 교단(또는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교단(또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로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고 신탁자는 소유권을 회복하므로 신탁자(지교회)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수탁자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신탁자는 소유권자로 표상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청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신탁자는 이 경우에 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결국 교회가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권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등기능력을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지교회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명의로만 교단의 유지재단의 명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술한 대로 지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으로의 재산권 이전행위는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해 무효(동법 제4조 1항)가 되는 동시에 과징금(동법 5조)과 이행강제금(동법 제6조), 더 나아가 형사 처벌(동법 제7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명의신탁행위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국민이나 단체보다도 도덕성에 앞장서야 하는 교회가 도덕의 최소한에 불과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0].

## 4. 판례로 본 교회분쟁시 재산귀속관계

지난 50여년 동안 교회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만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했다. 종전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 원리 기타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중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만 특별한 취급을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법리상 존재한 문제 때문에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변경했다. 이 판례는 교회의 분쟁에 대한 해결가능 약화,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부합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 새로운 판례는 교회 분쟁에서 재산귀속 여부가 어느 일방에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4.1 종전의 판례(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전)

종전 판례는 동일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 데 반하여 나머지 교인들이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 종전교회는 새로운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잔류교인들로 이루어진 종



전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고 보았다.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 종전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의 의미는 어떤 교회의 다수교인이 다른 교파로 이속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소수교인이 이에 반대하여 그대로 남아있는 자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교인전원이 참석치 않은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소속회로부터 탈퇴나 타파에의 가입결의를 하여도 이는 교회의 총의라고 할 수 없어 교회의 교파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하는 식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았고,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리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지난 50여년 동안 대법원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개신교 교회에 대하여서만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종전 판례의 입장은 당시 사회·경제적 배경하에서 나름대로 분쟁해결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기독교 교단의 분열에 따라 교단 소속 지교회의 분열이 빈번했고, 교인들은 소속 교회의 분열이라는 현상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현금 등을 통해 교회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교단의 분열로 신앙노선이 달라져서 도전하 하나의 신앙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되, 이들 모두 종전 교회의 터전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절실할 필요가 존재했다.

이러한 배려에 의해서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면서 재산 귀속관계는 분열 당시의 총유라고 판시해 왔으나 법리상 문제점이 노출됐다. 종전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 원리 기타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중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만 특별한 취급을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법리상의 문제가 존재했다. 또한 교회의 분열로 인한 분쟁에서 어느 쪽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종전 교회의 결의 요건이나 대표권을 갖출 수 없게 되어 결국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 법률적인 분쟁 해결이 불가능했다. 오히려 교단 상호간 및 교인 상호간의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발생했다. 이에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 일반 이론에 부합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게 되었다.

#### 4.2 새로운 판례(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2006년 전원합의체 새로운 판결(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사안은 분열전 교회의 목사가 교인들을 모아 기존 교회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신설하면서 분열전 교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교회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실제로 신설한 새로운 교회가 이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전 교회 당회의 결의서 등 관련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목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이에 대하여 분열 전 교회가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분열전 교회는 전원의 교인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전교회는 이미 분열되었기 때문에 사원총회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분열로 소멸된 종전교회의 재산을 그 분열 당시의 교인들이 주체가 되어 총유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종전교회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분열전 교회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11]. 여기에 대법원은 교회분열을 인정하던 입장과 종전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입장을 변경하여 교회 분열을 부정하는 입장의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

새로운 판례는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

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판례에 의하면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는 경우,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종전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

둘째, 종전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셋째,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로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다.

넷째, 다만,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소속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 IV. 결론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단체 중의 하나이다. 최근 우리 법제도상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중요한 쟁점을 제기한 “교회 분열과 재산의 귀속문제”에 관한 법리를 대법원판결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교회의 분쟁시 재산 귀속에 관하여 이를 예상한 성문의 범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의 사단법, 재단법상으로도 단체 내지 조직의 분열에 관한 범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관한 법이론도 주장하는 다수쪽의 이론이 형성, 개발되고 있다.

판례는 총유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총유규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의 법리는 총유규정에 기초하여 정립하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총유규정’의 적용과 ‘법인 규정’의 유추적용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 교회 분쟁시 그 해결을 위해 교단변경을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결의정족수 2/3 이상이라는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한 것은 교회의 사단성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분쟁해결을 위해 대법원은 종전의 분열인정에서 부인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한 입장을 취한 것은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참 고 문 헌**

[1] 홍춘의,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토지법학, 제26권, 제2호, p.104, 2010.  
 [2] 박윤직, 민법총칙(제7판), 박영사, 2007;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박영사, 2003.  
 [3] 박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8; 이영준, 전정판 민법총칙, 박영사, 1995; 김상용, “비법인사단과 조합의 채무에 대한 책임,” 고시연구 10월호, pp.79-80, 1989; 김인섭,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이영욱,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판례연구, 2008.  
 [4] 대법원 1992. 7. 20. 선고 92다2431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51591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도 4200 판결 등. 대부분 학설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윤직, 민법총칙(제7판), 박영사, 2007; 김상용, 민법총칙(전정판), 법문사, 2003; 민법총칙, 박영사, 1995; 김형배, 민법학강의(제3판), 법문사, 2003; 총칙(제2판), 법문사, 2006;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박영사, 2003; 이은영, 민법총칙(제4판), 2009; 지원립, 민법강의, 홍문사, 2002.

[5] 강혁신,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區分所有權의 動態”, 민사법학, 제43권, 제1호, p.170, 2008.  
 [6] 박윤직, 민법총칙(제7판), 박영사, 2007;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박영사, 2003; 김상용, 민법총칙(전정판), 법문사, 2003, 김진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민사법학, 제11권, 제12호, p.514, 1995.  
 [7]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박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8]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고상용, 민법총칙(제3판), 법문사, 2004; 김주수, 민법총칙(제5판), 삼영사, 2001; 황적인, 현대민법론 I (증보판), 박영사, 1988.  
 [9] 백현기, 교회의 분쟁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10] 윤철홍, “기독교유지재단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민사법학, 제43권, 제1호, pp.3-42, 2008.  
 [11] 민유숙,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률관계”, 대법원판례해설 제60호, p.66, 2006; 홍춘의,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토지법학, 제26호, 제2호, p.114, 2010.

**저자소개**

소 재 열(Jae-Youl So)

정회원



- 2002년 7월 :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목회학 박사·교회법)
- 2003년 2월 : 칼빈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사)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2012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과정수료)
- 2008년 2월 ~ 현재 : 칼빈대학교 한국교회사 및 교회헌법 전임대우교수
- 현재 : 평안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 교회역사, 교회법학, 교육, 행정